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504

발의연월일: 2024. 7. 8.

발 의 자:김용만・민병덕・이수진

임오경 · 임미애 · 복기왕

권칠승 · 이강일 · 황정아

백승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매도는 매도 당시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장증권을 매도하거나,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를 의미하며, 우리나라는 현재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는 차입공매도만 한정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차입공매도를 위해서는 매도 이전에 주식을 빌리는 대차거래가 필수적이나 현재 국내 증권사들은 관행적으로 이 대차거래를 별도의 시스템 없이 전화·메일·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확인하고 있고차입 내역도 수기로 입력하고 있음. 이처럼 대차거래에 대한 체계적인검증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할수 있으며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한편, 공매도를 포함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는 적발된 뒤에도 재범률이 높은 특징이 있음. 실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자 중 재 범자는 전체의 5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 원인은 현행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경미하여 그 실효성이 미흡한 데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증권사가 공매도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공매도전산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하도록 하여 불법 공매도 발생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차단 하고, 상습으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 불법 공매도 등 불공 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자본시장의 공 정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 446조제31호의2 및 제447조의3 신설 등).

법률 제 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0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증권시장에서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려는 자는 공매도가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지 검증할 수 있도록 주문의 처리 과정이 전자적으 로 이루어지는 공매도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구 축하여야 한다.
- ⑤ 공매도 주문의 위탁과 수탁은 반드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⑥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3조제1항제10호 중 "제180조"를 "제18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446조에 제3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의2. 제180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공매 도 주문을 위탁하거나 수탁한 자

제44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7조의3(상습범) 상습으로 제443조, 제445조제22호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① ~ ③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증권시장에서 공매도 주문
	을 수탁하려는 자는 공매도가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지 검증
	할 수 있도록 주문의 처리 과
	정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u>공매도전산시스템(이하 "전산</u>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u>야 한다.</u>
<u><신 설></u>	⑤ 공매도 주문의 위탁과 수탁
	은 반드시 전산시스템을 이용
	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u><신 설></u>	⑥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4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제443조(벌칙)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	
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	
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	
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 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 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 원으로 한다.

- 1. ~ 9. (생략)
- 10. <u>제180</u>조를 위반하여 상장증 권에 대하여 허용하지 아니 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 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
- ②・③ (생략)
- 제4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31. (생 략) <u><신 설></u>

32. ~ 63. (생 략) <신 설>

<u>.</u>	
1. ~ 9. (현행과 같음)	
10. <u>제180조제1항부터 제3항까</u>	
ス]	
②·③ (현행과 같음)	
제446조(벌칙)	
1. ~ 31. (현행과 같음)	
31의2. 제180조제5항을 위반하	
여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	
거나 수탁한 자	
32. ~ 63. (현행과 같음)	
<u>제447조의3(상습범) 상습으로 제4</u>	
43조, 제445조제22호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2분의 1까지 가중한다.